



보도자료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증권·자산운용·공시·회계감독국 총괄팀장
· 담당자	이은태 팀장(증권, 3786-8273), 정갑재 팀장(자산운용, 3786-8312), 정은율 부국장(공시, 3786-8434), 최진영부국장(회계, 3786-7702)
· 배포일	2006. 1. 3.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월5일(목)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06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자본시장부문의 금융제도

주요 내용

□ 증권산업 제도

-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잠식률 반영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 공시제도

- 공시운영시간 변경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유통·발행시장 제도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 회계제도

-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시행
- 신 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부문의 금융제도

2006. 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I 증권산업 제도

1.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가. 목적

- 증권산업 진입시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변경시에는 그 자격요건에 관한 근거법규가 없음
- 증권산업 영위에 부적합한 자가 증권회사 등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입시 주요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유명무실 해질 우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를 도입
 -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완료 : 05. 7. 29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 등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승인 필요○ 주요승인요건<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건전성 확보,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 승인없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의 처분명령 등의 조치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법 제32조의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의2(2006.1. 30)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업무팀 (☎ 3786-8280),
자산운용감독국 경영지도팀 (☎ 3786-8329)

2.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가. 목적

- 수익기반을 다변화하고, 자산운용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신탁업 경영 인가
- 그 동안 은행의 신탁상품은 대출에 집중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증권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가증권 운용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신탁상품과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이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9개증권회사*가 금감위로부터 신탁업을 인가 받음에 따라 신탁업 영위가 본격화

* 국모·국민·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탁업법 제3조, 신탁업법시행령 제2조의2, 신탁업인가지침 (2005.12. 9.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업무팀 (☎ 3786-8280)

3.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가. 목적

-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펀드의 직접판매를 허용
- * 체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고 고유재산의 의한 환매가 금지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게 직접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자산운용회사의 부실화 우려는 없음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자산운용사는 펀드판매시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 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 외에<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사 본점(인터넷 등 온라인 포함)을 통한 직접 판매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3조(2006.1월 5일 시행 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판팀 (☎ 3786-8312)

4.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금잠식률을 반영

가. 목적

-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금의 잠식정도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이 없어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부실 자산운용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음
-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의 잠식정도를 나타내는 법정자본금잠식률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함으로써 경영실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의 잠식정도를 반영하는 평가항목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자본금잠식률을 자본의 적정성 부문의 평가항목으로 추가- 또한, 법정자본금 잠식회사의 등 부문 계량평가등급은 3등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상한을 설정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호, 제6호 및 제8호(2006.4월 8일 시행 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경영지도팀 (☎ 3786-8329)

5.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가. 목적

- 현행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제도에서는 간접투자재산위험액이 펀드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펀드규모 또는 수탁고 규모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
- 따라서,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율을 차등 적용하여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평가펀드에 대하여 펀드의 규모별로 위험율을 차등하여 적용- 대형펀드는 현행보다 위험율을 낮추고 소형펀드는 현행보다 위험율을 가중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제29조 등(2006.4월 8일 시행 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경영지도팀 (☎ 3786-8329)

6. 법인투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가. 목적

- MMF의 판매 또는 매입시 기준가격으로 과거가격을 사용하게 되면 신규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위험거래가 가능하고, 기존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손익이 이전됨으로서 펀드 투자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MMF 기준가격을 단계적으로 과거가격에서 미래가격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투자자간 형평성을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MMF 매입 또는 환매시 기준가격으로 미래가격 대신 과거가격을 사용- 다만, '05.11.21부터는 법인투자의 MMF환매시 미래가격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7.1부터 법인투자의 MMF 가입시에도 미래가격을 적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칙(2006.7월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 3786-8312)

7.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가. 목적

-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계산기준이 투자일임자산 또는 투자자문자산 총액에만 연동되도록 제한
- 그 결과 좋은 실적을 올린 자산관리자가 그렇지 못한 관리자와 대등 소이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자산관리자의 성과동기가 줄어들고 양질의 자산운용방법 개선유인도 감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랩어카운트에 자유로운 성과수수료 수취를 허용(비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수수료를 허용)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일임자산 또는 투자자문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정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의 계산기준을 증권회사와 고객이 정할 수 있어 투자성과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음○ 위탁매매수수료도 정수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2005. 3. 28. 도입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업무팀 (☎ 3786-8280)

*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가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 2006년 상반기중 국회입법을 목표, 업계준비를 위해 일정기간 입법시행을 유예할 예정

< 주요내용 >

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 허용

- 현재 엄격히 분리돼 있는 각 금융업의 경영을 허용하여 증권, 선물, 자산 운용, 신탁 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

②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현재의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

③ 간접투자펀드 형태 제한 폐지

- 현재는 수익증권 계약형태인 투자신탁,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합자형태의 PEF만 간접투자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투자조합 등의 펀드도 가능

II 공시제도

1. 공시운영시간 변경

가. 목적

- 일부 상장기업이 야간·주말시간대에 악재성정보를 공시('올빼미' 공시)하여 공시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균질하고, 현행 공시서류의 유형별로 상이한 공시시한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시운영시간을 변경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경영사항의 신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 07:00~21:00- 토요일 : 09:00~14:00* 부득이한 경우 익일 07:2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시서류의 제출가능시간을 - 평일 : 07:00~18:00- 토요일 폐지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5%보고서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07:00 ~ 17:30* 다만 21시까지 제출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평일은 마감후 제출(18:00~19:00)은 가능하나, 이는 단순보관한 후 다음 근무일에 접수처리(금요일 제출분은 월요일 접수)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선물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1. 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3786-8434)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가. 목적

- 야간·주말공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요일 공시접수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

나. 변경내용

- 5% 보고기간(5일) 산정시 토요일을 제외함

종 전	변 경
○ 5%보고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날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5%보고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날 - 공휴일, 근로자의 날, <u>토요일</u>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2006. 1. 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 (☎ 3786-8423)

3.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가. 목적

-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시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요경영사항 신고(수시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금감위규정(발행공시규정)상 주요경영 사항 신고 : 200개 사항	○ 71개 사항으로 축소*
○ 자기자본 등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신고항목의 4단계(1·3·5·10%) 비율 기준	○ 2단계(5·10%)로 조정
○ 발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기준 공시사항	○ 건별기준으로 변경

* 법령사항,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사항, 기업지배구조관련사항 등 71개 사항 존치
* 거래소 공시규정 변동 현황(유가증권시장 : 232→134개, 코스닥시장 : 227→135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선물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4. 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3786-8461)

4.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가. 목적

- 합병 이사회결의 이전이라도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계약 체결시 공시토록 하는 것은 합병정보의 사전유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폐지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과 평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때에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거체없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신고의무 폐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판행및공사등에관한규정 §83(2006. 1. 1일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사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3786-8428)

III

유통·발행시장 제도

1.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제구축

가. 목적

- 금감원이 외국인투자한도 설정종목의 관리를 위해 (주)코스콤에 위탁·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동 한도설정 종목에 대한 외국인 주문처리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한도종목 관리 및 주문 처리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외국인 투자관리 전산시스템의 노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관리 전산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성능을 대폭 보강

- *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시 매매 체결 속도 및 안정성 저하 우려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6.1월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 3786-8342)

2.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가. 목적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채권시장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조기경보기능(Early warning system) 및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업협회에서 3개 채권시장 관리지표*를 매월 산출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채권시장체감지표, 시장신용위험 지표, 산업별자금집중도지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2006.1월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 3786-8342)

3.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가. 목적

-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거래를 기피하는 종목에 대해 시장에 매수·매도주문을 내어 유동성을 공급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 회사가 당해 종목에 대하여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여 유동성을 공급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2006.1월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 3786-8342)

4.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개선

가. 목적

- 외국법인에 대하여 1차상장(Primary Listing) 허용, 국제적 적합성이 부족한 일부 상장요건 개선 등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통한 우리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도모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외국거래소에 기상장되어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만 국내증권시장 상장 허용	○ 외국법인의 국내증시 1차상장 허용
○ 자본금 요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은 규모요건으로서 자본금 요건을 설정 	○ 상장요건 중 자본금요건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을 기업의 규모 요건으로 사용(국내·외기업 동일 적용)
○ 부채비율 요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을 동업종 또는 전체평균 부채비율 중 높은 비율의 2배(코스닥은 1.5배) 미만으로 제한 	○ 계량적 기준으로서의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하고 유동비율·차입금의존도 등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질적심사)하여 상장여부를 결정(국내·외기업 동일 적용)
○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코스닥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을 진입요건으로 설정 (일반 10%, 벤처 5%) 	○ 자기자본이익률(일반 10%, 벤처 5%)요건과 이익규모(일반 20억, 벤처 10억)요건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국내·외기업 동일 적용)

○ 현재 외국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기준은 2차상장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자본잠식 등 일부 요건만 적용	○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지주회사 상장요건 등 	○ 외국지주회사 상장요건 적용 방법 명시 등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005. 12. 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사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3786-8440)

5.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가. 목적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가액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도모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가액 결정방식은 다음의 3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방식 발행에 대하여 3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낮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
①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② 최근일 종가, ③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기증권발행및공사등에관한규정 §61(2006. 1. 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공사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3786-8428)

IV 회계제도

1.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가. 목적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의 강화를 추진
 - * 감사인의 감사업무의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
-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요건*도 확보
 - * 한공회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경우 독립성 등의 미비에 따라 공동검사 불가(PCAOB의 입장)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모든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선위(금감원)가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직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감사인중 일부에 대하여는 한공회에 위탁하여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6.시행 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2팀 (☎ 3786-7717)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

가. 목적

- 모든 외감대상 법인은 외감법 제2조의2에 의거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관리·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이에 대한 실무적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규준과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의견서를 제정(05.6.23)

나.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의 기본원칙 제시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 제공 - 자산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 포함 3. 내부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을 고려하여 설계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자가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된 미비점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 6.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설계·운영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5-1 (2006.1.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 3786-7752)

3. 신 시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가. 목적

-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학점이수제 및 영어 시험대체제 등에 따라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2006년부터 미리 접수

나. 변경내용

구 분	2006년도 시험	2007년도 시험
용시 원서	접수 방법	서면접수와 인터넷접수 병행
	접수 시기	매년 1월중 1차 시험과 2차시험 응시원서 동시접수
증빙 서류	접수 방법	1차시험 면제 신청 서류만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학점 이수과목 인정(변경) 신청	불필요
	학점이수 소명신청	불필요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불필요
제1차 시험면제 신청	응시원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서면접수)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2차시험 원서접수 전('06.3월~5월, 9월~12월, '07.3월~4월말)에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됨

다.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3786-7753)